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8335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원고, 항소인

2. B

3. C

4. D

5. E

6. F

원고 4 내지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단996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6,362,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1,745,86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206,61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I은 2012. 12. 1. 12:10경 그 소유의 ○호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소재 도로를 양북면 방향에서 길림사 방향으로 가던 중 운전 부주의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해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전신주를 충격하여 가해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으로 하여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상악 좌우측 중절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측절치 및 좌측 견치 치아(6개) 탈구, 상악 좌우측 측절치 치아(2개) 아탈구]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I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과 갑7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과 I은 이웃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점, I, 원고 A, J 등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가해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전신주를 충격한 사고인데, 당시 가해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I과 J이 상해를 입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과 I의 관계, 가해차량의 운행목적과 경위, 동승 경위, 원고 A의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 A의 잘못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2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피고는, I이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1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I이 오로지 원고 A을 위해 가해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원고 A의 과실 비율이 높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을1호증)의 내용과 원고 A의 실제 상해 정도가 차이나는 점 등에 비추어 I은 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를 다소 축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가) 기초사실

- (1) 생년월일 : 1979. 1. 2.
- (2) 사고 당시 나이 : 33세 10개월 남짓
- (3) 성별 : 여자
- (4) 기대여명 : 52.18년

##### 나) 가동연한에 대한 금전적 평가 및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2. 1.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39. 1. 1.까지 도시일용노동에 매월 22일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돈

- (1) 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 80,732원
- (2) 2013. 1. 1.부터 2013. 8. 31.까지 81,443원
- (3)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 83,975원
- (4) 2014. 1. 1.부터 2039. 1. 1.까지 84,166원

#####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치아 상실,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 불가능한 후유장해

(2) 노동능력상실률

위 후유장해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및 담버그씨 치아기능상실률 기준 1.14%(원고들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제12급 제3호에 따른 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배상법시행령 상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고 등급 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바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직업, 연령, 건강 상태, 사고 당시 치아 손실 상태 및 현재의 치료 정도,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저작능력 상실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방법인 담버그씨 치아점수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산

(단위 : 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2-12-1	2012-12-31	80,732	22	1,776,104	1.14%	0.9958	20,162
2	2013-1-1	2013-8-31	81,443	22	1,791,746	1.14%	7.8215	159,761
3	2013-9-1	2013-12-31	83,975	22	1,847,450	1.14%	3.8171	80,391
4	2014-1-1	2039-1-1	84,166	22	1,851,652	1.14%	187.4154	3,956,120
일실수입 합계 :								4,216,43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 2, 갑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치과의원장(2013. 5. 23.자), 대학교 병원장(2013. 5. 31.자), 대학교 병원장(2013. 7. 2.자), 대학교 병원장(2013. 9. 16.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 6,67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향후 치료비 : 22,930,820원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향후 상악 전치부 4본의 전장도재금관브릿지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220만 원(=55만 원 × 4)이 소요되며, 하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하부구조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220만 원(=110만 원 × 2)이 소요되며, 하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상부보철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550만 원(110만 원 × 5)이 소요될 예정이며, 위 상악 전치부의 전장도재금관브릿지 장치와 임플란트 상부보철 장치는 그 수명이 각 8.5년(평균수명인 7년 내지 10년의 중간치이다)이고, 위 임플란트 하부구조 장치는 그 수명이 15년(평균수명인 10년 내지 20년의 중간치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및 갑5호증의 3, 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3. 3.경까지 위 상악 전치부의 전장도재금관브릿지 치료를, 2013. 8.경까지 위 하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하부구조 및 상부보철 치료를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위 상악 전치부의 전장도재금관브릿지 향후치료는 그 수명이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1. 9. 1. 시술을 하여 여명기간 종료일까지 매 8.5년마다, 위 임플란트 하부구조 향후치료는 그 수명이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 9. 1. 시술을 하여 여명기간 종료일까지 매 15년마다, 위 임플란트 상부보철 향후치료는 그 수명이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2. 2. 1. 시술을 하여 여명기간 종료일까지 매 8.5년마다 각 시술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22,930,820원이 된다.

종류: 상악전치부 전장도 재금관브릿지	수명: 8년	종류: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하부구조	수명: 15년	종류: 임플란트 상부보철물	수명: 8년
단가: 2,200,000	6월	단가: 2,200,000	6월	단가: 5,500,000	6월
최초필요일: 2021-9-1	수치합계: 2,6376	최초필요일: 2028-9-1	수치합계: 1,2575	최초필요일: 2022-2-1	수치합계: 2,6112
필요최종일: 2065-2-4	비용총액: 5,802,720	필요최종일: 2065-2-4	비용총액: 2,766,500	필요최종일: 2065-2-4	비용총액: 14,361,600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현가수치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현가수치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현가수치
1	2021-9-1	105	0.6956	1	2028-9-1	189	0.5594	1	2022-2-1	110	0.6857
2	2030-3-1	207	0.5369	2	2043-9-1	369	0.3940	2	2030-8-1	212	0.5309
3	2038-9-1	309	0.4371	3	2058-9-1	549	0.3041	3	2039-2-1	314	0.4332
4	2047-3-1	411	0.3686					4	2047-8-1	416	0.3658
5	2055-9-1	513	0.3187					5	2056-2-1	518	0.3166
6	2064-3-1	615	0.2807					6	2064-8-1	620	0.2790

3) 합계 : 29,600,820원(= 기왕 치료비 6,670,000원 + 향후 치료비 22,930,820원)

다.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

25,362,940원[= (일실수입 4,216,434원 + 적극적 손해 29,600,820원) × 75%]

라.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할 사유 : 원고들의 연령 및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A의 과실 정도, 원고 A이 입은 상해 및 후유장애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원고별 인정금액

가) 원고 A : 100만 원

나) 원고 B, C : 각 20만 원

다) 원고 D, E, F : 각 5만 원

마.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 A에게 기왕 치료비로 684,82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 A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돈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왕 치료비로 684,8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원고 A에게 기왕 치료비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3. 나. 1)항에서 인정되는 기왕 치료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책임이 75%로 이미 제한되었는바, 피고가 지급한 기왕 치료비가 위 3. 나. 1)항의 기왕 치료비와는 별도의 치료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돈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피고에게 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6,362,940원(=재산상 손해 25,362,940원 + 위자료 100만 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로 각 20만 원, 원고 D, E, F에게 위자료로 각 5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 A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23.까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2.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되,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민희진

                  판사            이상욱